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서울본청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 11010-~~113~~

시행일자 1996. 3. 1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승가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훈령제 836 호

1.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6 호 2부. 끝.

# 서울특별시

(제 3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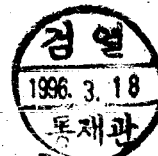
수신 회계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3. 2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6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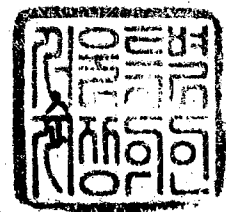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자금관리와 시금고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장기전망, 자금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자금운영의 기본정책 대안제시 및 기타 서울특별시 자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함

나.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인 행정1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됨

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년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소집

라.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운영 정책결정, 서울특별시금고운영 등에 활용

마.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운영수당에서 지급하고 필요시 전용 등 조치

다. 합 의 : 필요없음

##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자금관리와 시금고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금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금융시장의 장기전망
2. 자금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자금운영의 기본정책 대안제시
4. 기타 서울특별시 자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교수, 금융전문가, 시의회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의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와 시재정관련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자문결과) 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운영 정책결정, 서울특별시금고운영 등에 활용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금관리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